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 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추진 일정이 모두 2022년 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재원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고, 지방의회의 염원인 자치조직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

더욱이 201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나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 제도를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 정부의 임기 중 추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되어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넷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 입법이 가능하게 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촉구한다.

다섯째,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위 약화 및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